

퇴직연금제도

● 개요

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(금융기관)에 적립하여,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(또는 일시금)으로 수령할 수 있는 **노후소득보장제도**

- * '05년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
- * '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(도입률 27.5%), 593만명 가입(가입률 51.5%)

● 퇴직연금제도의 종류

- **확정급여형(Defined Benefit)** :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. 운용하고,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* 수령
 - *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
- **확정기여형(Defined Contribution)** :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,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
 - *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
- **개인형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** : 근로자가 이직·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·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
 - * 가입대상 :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,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자영업자,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직원, 별정우체국 직원 등

●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

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

**퇴직연금규약
작성·신고**

법정 기재사항*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,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

*퇴직연금사업자선정, 가입자범위, 부담금,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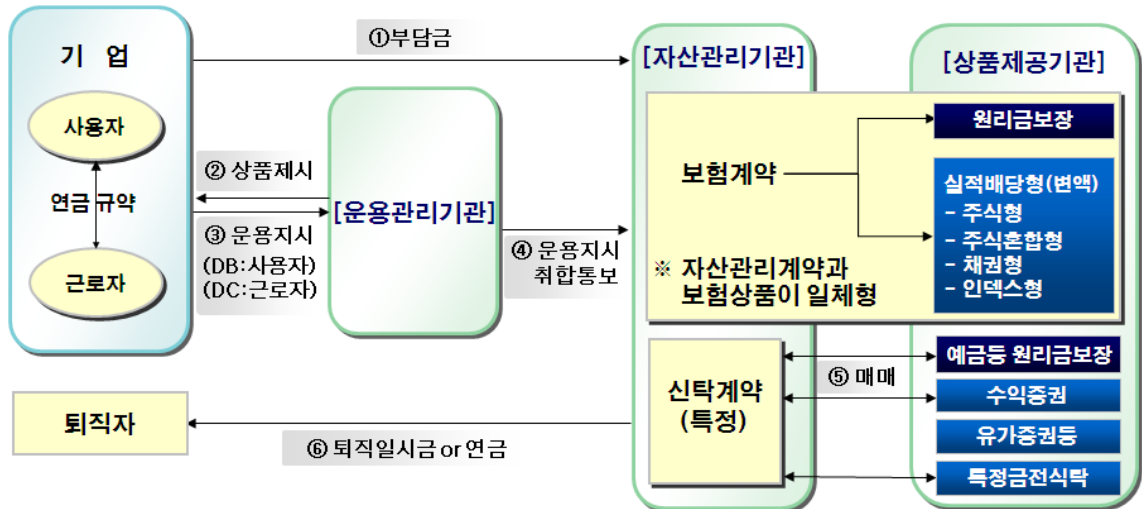
**운영 및 자산관리
계약 체결**

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

제도 운영

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,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

●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



●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

| 구분 | 퇴직금 | 확정급여형 | 확정기여형 | 개인형(IRP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퇴직급여 형태 | 일시금 | 연금 또는 일시금 | | |
| 급여수준 |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|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|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| 가입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|
| 규약신고 | 취업규칙 | 퇴직연금규약 | | 불필요 |
| 사외적립 부담 수준 | 사용자 재량 | 퇴직금 추계액의 90% 이상 |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 | 가입자 재량 |
| 부담금 납부 | 사용자 | | | 가입자 |
| 수수료 부담 | - | 운용·자산관리 :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: 근로자 | | 가입자 |
| 적립금의 운용 | - | 사용자 | 근로자 | 가입자 |
| 연금 수령요건 | - |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| | 55세 이상 |
| 중도 인출 (중간정산) | 가능 (특정한 사유*) | 불가 | 가능 (특정한 사유*) | |

*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,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** 등

**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(중간정산)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

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일부개정(시행일 '20.4.30.)

***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(중도인출) 사유에 포함,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'20.11.3.)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
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홈페이지 : www.moel.go.kr/pension